

의 안 번 호	제 660 호
의 결 연 월 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상식 의원 등 8인
발의연월일	2021년 3월 3일

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상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6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3월 3일

발 의 자 : 이상식, 연종석, 송미애
윤남진, 이상정, 이상욱
허창원, 최경천

1. 제안이유

-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“근로”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·가치중립적인 개념인 “노동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,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
-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요구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및 각 조문 중 “근로”라는 용어를 “노동”으로 개정
- 취약노동자 권리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추가(안 제4조)
-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(안 제21조)

3. 조례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1. 2. 17. ~ 2021. 2. 27. (10일)
-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함
-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근로자의”를 “노동자의”로, “근로자들”을 “노동자들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근로자”란”을 ““노동자”란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근로를 하는 근로자”를 “노동을 하는 노동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근로자”를 각각 “노동자”로, 같은 항 중 “근로할”을 “노동할”로 하고,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도지사는 여성 노동자, 비정규직 노동자, 이주 노동자, 파견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그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, 인종,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근로자”를 각각 “노동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근로자 등 취약근로자”를 “노동자 등 취약노동자”로, “근로자의”를 “노동자의”로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근로실태조사”를 “노동실태조사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근로자의”를 “노동자의”로, “근로자 권리보호”를 “노동자 권리보호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)”을 “(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중 “근로자가 근로자의”를 “노동자가 노동자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근로자”를 각각 “노동자”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근로자권리보호위원회”를 “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근로자의”를 “노동자의”로, “근로자권리보호위원회”를 “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”로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한다.

제4장 보칙(제20조부터 제21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보칙

제20조(비밀준수)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제21조(포상) 도지사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도민·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 등을 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,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근로자권리보호위원회와 그 위원은 각각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(조례명) <u>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에 따라 충청북도 <u>근로자의</u> 권리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<u>근로자들이</u>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1. “<u>근로자</u>”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 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. 2. (생략) 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<u>근로를 하는 노동자</u> 및 사용자이다.	(조례명) <u>충청북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 <u>노동자의</u>----- -----<u>노동자들</u>----- ----- -----. 제2조(정의) 1. “<u>노동자</u>”란 ----- ----- ----- -----. 2. (현행과 같음) 제3조(적용대상)----- ----- -----<u>노동</u> <u>하는 노동자</u>-----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<u>근로자</u>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 ② 도지사는 <u>근로자</u>가 건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③ 도지사는 <u>근로자</u>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<u>근로할</u>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(신 설)	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----- ----- <u>노동자</u>----- ----- -----. ② -----<u>노동자</u>----- ----- -----. ③ -----<u>노동자</u>----- ----- -----<u>노동할</u>----- -----. ④ <u>도지사는 여성 노동자, 비정규직 노동자, 이주 노동자, 파견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그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, 인종,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<u>근로자</u>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	제5조(다른조례와의 관례) ① <u>노동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② <u>근로자</u>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6조(노동정책 기본계획)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<u>근로자</u> 등 <u>취약근로자</u>를 비롯한 일반 <u>근로자</u>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5. 그 밖에 <u>근로자</u>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(생략)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내의 <u>근로실태조사</u>를 실시할 수 있다. 제9조(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) 도지사는 <u>근로자의</u>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 법령 안내 등 <u>근로자 권리보호</u>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.	② <u>노동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. 제4조(노동정책 기본계획) ① ----- -----<u>노동자</u> 등 <u>취약노동자</u>-----<u>노동자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<u>노동자</u>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<u>노동실태조사</u> -----. 제9조(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)-----<u>노동자의</u>----- ----- -----<u>노동자 권리보호</u>----- ----- -----.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<u>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</u>) ① 도지사는 도민과 <u>근로자가 근로자의</u>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도지사는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<u>근로자의</u>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③ 도의 출자 또는 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<u>근로자의</u>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제3장 <u>근로자권리보호위원회</u> 제11조(설치 및 기능) ① 도지사는 <u>근로자의</u>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<u>근로자권리보호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~ 2. (생략) 3. <u>근로자의</u>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, 정책에 관한 자문 4. 그 밖에 <u>근로자</u>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	제10조(<u>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</u>) ① ----- <u>노동자가 노동자의</u>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<u>노동자</u>----- ----- -----. ③ ----- ----- -----<u>노동자</u>----- ----- -----. 제3장 <u>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</u> 제11조(설치 및 기능) ① ----- <u>노동자의</u>----- ----- -----<u>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</u>----- -----. ②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노동자</u>----- ----- 4. ----- <u>노동자</u>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(신설)	<u>제4장 보칙</u>
(신설)	<u>제20조(비밀준수)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</u>
(신설)	<u>제21조(포상) 도지사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도민·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 등을 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</u>
부칙	부칙
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	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
(신설)	<u>제2조(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충청북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근로자권리보호 위원회와 그 위원은 각각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노동자권리보호 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.</u>

관련법령 발췌

□ 근로기준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근로자”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사용자”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.

□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제125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)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「근로기준법」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라 한다)의 노무(勞務)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.

1.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
2.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